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1999. 11. 5.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대구광역시 수의사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9907구사1053)	대구광역시수의사회는 '97. 1월경 수의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사업자들의 동물진료수가 수준을 정한 "동물진료보수규정"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동물병원을 개원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부하는 등 수의사의 "동물진료수가 결정 카르텔제도"를 시행해 오던 중 '99. 2. 5자로 카르텔일괄정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동물진료수가 결정 카르텔제도"가 폐지되자, 2. 24 대구광역시 소재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대부분의 구성사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계속하여 동물진료수가를 자신이 '97. 1월경 배부한 "동물진료보수규정"표상의 금액을 철저히 유지할 것을 결정하여 대구광역시지역 동물진료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제1호 위반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1999. 11. 1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충주지역 5개 레미콘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905전사0714)	충북 충주시 소재 주식회사 동영산업·성안산업·사조산업·충주산업·대흥레미콘의 원가계산 실무자들은 '99. 1월 초순경 충주관광호텔 커피숍에 모여 레미콘 규격별 단가표를 작성하였으며, 2월말경 점심시간을 이용해 충주시 소재 참가든식당에 모여 레미콘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구두로 합의하고, 이틀후 동 장소에 모여 레미콘판매가격에 대해 동 단가표의 85%이상 받기로 합의한 내용의 합의각서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99. 1. 1.부터 소급적용하였으며, 동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99.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레미콘규격별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레미콘을 판매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충주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연명하여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단위 : 천원) · (주) 동영산업: 1,900 · (주) 성안산업: 5,200 · (주) 사조산업: 5,900 · (주) 충주산업: 3,400 · (주) 대흥레미콘: 10,600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광주광역시 오토바이업자협회의 경쟁제한행위 및 거래거절강요행위에 대한 건 (9905광사0770)	광주광역시 오토바이업자협회는 '97년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인하여 오토바이 부품가격이 인상되자 '98. 2월 초순경부터 각 회원업소의 의견을 수렴한 후, 3. 11. 이사회회의 승인을 거쳐 오토바이 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가격표를 인쇄하여 4. 11. 3개 부품업소를 제외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부하고 이들로 하여금 4. 12.부터 동 가격표상의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여 광주광역시지역 오토바이 부품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며, '99. 1. 20. 광주광역시 소재 우정, 광천, 전남상사의 3개 오토방이 부품공급업자를 자신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타 지역에서 유입된 덤핑부품이 시중에 유통되자 이들에게 부품가격을 인하해줄 것과 회원배가운동의 일환으로 비회원업소에 대한 회원가입을 권유해 달라고 협조요청한 바 있으나, 우정상사가 이를 거절하자 2. 23. 저녁 이사회를 개최하여 우정상사의 취급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결의함으로써 실제로 2. 25.부터 5. 10.까지 우정상사의 기존 거래처 60여개소중 20여개소가 거래를 중단하는 등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위반	◎ 경쟁제한행위 및 거래거절강요행위를 하지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1,100천원

1999. 11. 20.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4개 방사선과의원 및 1개 의료법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9906유거0898)	연수방사선과의원장, 인천영상진단방사선과의원장, 간석진단방사선과의원장 및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가좌성모는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의원에서 설치·운용중인 CT나 MRI의 촬영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96. 1월에서 '98. 9월까지의 기간동안 CT나 MRI촬영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의원에게 촬영 1건당 CT촬영환자의 경우는 3~6만원, MRI촬영환자의 경우는 8~10만원 정도로 촬영비용의 20~30%에 해당하는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지말라는 시정명령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주)서울문화사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9907유거1116)</p>	<p>주식회사 서울문화사는 '99. 4. 24부터 8,500원에 판매한 「우먼센스」 '99. 5월호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자신이 제3자인 (주)라미화장품으로부터 1,705원에 구입한 5색 립빠레트와 제3자인 태익화학으로부터 462원에 구입한 립라이너 펜슬(정식경품) 등 자신의 구입단가 합계금액이 2,167원인 소비자경품을 제공하였으며, 자신이 공급하는 잡지 등 출판물을 서점에 판매하는 (주)수송사가 서울특별시에 소개한 교보문고와 영풍문고로부터 5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고객에게 줄 것이 없느냐는 요청을 받았다고 이를 자신에게 요청해오자 「우먼센스」 3월호의 경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월 제3자인 (주)동양화장품으로부터 1,650원에 구입하였던 '과일나라 후루디아 UV 메이크업 베이스' (추가경품)의 재고 중 일부를 (주)수송사를 통해 교보문고에게 280개, 영풍문고에게 180개 등 합계 460개를 제공하여, 교보문고와 영풍문고가 (주)수송사를 통해 공급받은 자신의 정식경품 2종과 추가경품 1종 등 자신의 구입단가 합계금액이 소비자경품류의 제공한도 3,000원을 1,771원을 초과한 3,817원 상당의 소비자경품류를 자신의 「우먼센스」 5월호의 구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p>	<p>◎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1999. 11. 2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삼성전자(주)의 재판매가 겨유지행위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9908독점1233)</p>	<p>삼성전자주식회사는 에어컨 예약판매를 참여하는 자사 대리점과 '97년 1차, 2차 에어컨 예약판매, '98년 1차, 2차 에어컨 예약판매, '99년 1차 에어컨 예약판매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에어콘 예약판매 약정서』에 피십인이 정한 가격기준으로 에어컨을 소비자에게 예약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에어컨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겨유지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의 대리점인 종합가전점과 체결한 『종합가전점 지정 및 등록 약정서』에 반기별로 실적평가를 하고 가전제품 월평균 매출액이 150백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 매출이 1회 평가시에 월평균 30백</p>	<p>◎ 재판매가겨유지행위와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거래 판매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p>만원 미만이거나, 2회 평가시에 월평균 50백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가전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종합가전점들의 자유로운 구매·판매활동을 제한하고 이들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9조 및 제23조 제1항제4호 위반</p>	
	<p>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98. 7. 11.부터 '99. 8. 4.까지의 기간동안 단체수의계약품목인 변압기에 대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의거 한국전력(주) 등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변압기협의회는 우성전기공업(주)가 다른 구성사업자인 조일성업전기(주)의 계열회사라는 것을 이유로 우성전기공업(주)에게 물량배정을 중지할 것을 자신에게 요청하자, 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중인 '98. 7. 11.부터 우성전기공업(주)에게 변압기 물량의 배정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98. 8. 28. 조사결과 우성전기공업(주)와 조일성업전기(주)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변압기협의회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또 이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에 질의한 결과, '98. 2. 11.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성전기공업(주)와 조일성업전기(주)가 동일업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서 '99. 3. 17.에 우성전기공업(주)에게 물량배정을 재개하였으나, 변압기협의회가 우성전기공업(주)에 대한 물량배정사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99. 5. 3. 또다시 우성전기공업(주)에 대하여 법적근거 없이 물량배정을 중지하여 우성전기공업(주)가 배정받아야 할 계약물량 약 38억원중 31%에 불과한 약 12억원의 물량만 배정하고 26억원의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p>	<p>◎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 활동제한행위를 하지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1999. 11. 25.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p>(주)두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907광고1069)</p>	<p>주식회사 두산은 '99. 7. 5.자 조선일보 등 신문 및 포스터를 통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미소주'가 제조과정에서 쉐증류원액이 일부 첨가되었을 뿐임에도 불</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p>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p>구하고 이에 대하여 벼가 가득한 논을 배경으로 “米xxozu, 미소주”라는 상표가 붙은 소주제품을 배치하여 동 제품의 투명한 용기속으로 벼가 드러나 보이게 광고하고, “美味米米”, “좋은 쌀 부르는 소리”, “美味米소주 탄생!”, “맛이 아름다운 美味米소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쌀 원액 첨가”라는 문구는 광고의 좌측상단이나 우측하단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마치 ‘미소주’가 쌀을 주원료하여 제조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 위반</p>	<p>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4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8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1999. 11. 30.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p>LG산전(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9906조일0834)</p>	<p>LG산전주식회사는 '97. 9. 15. 대경엘리베이터 등 47개 보수협력업체와 '97. 9. 16부터 '98. 9. 15까지의 승강기 보수점검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내용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수가 인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중인 '98. 1. 15과 '98. 5. 6. 2회에 걸쳐 보수협력업체와 단가인하합의서를 작성하여 보수위탁단가를 당초 계약시의 55,000원에서 52,000원과 45,000원으로 차례로 인하시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또한 47개 보수협력업체와 '98. 9. 15부터 '99. 9. 15까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승강기보수점검위탁계약서 상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종료 후에도 보수협력업체에게 1년동안 계속 담보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설정하여 보수협력업체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구속함으로써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 위반</p>	<p>◎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을 하지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